

투표 제안

질문 # 1: 선거 자금 조달

본 제안은 뉴욕시 선출직 후보자가 후원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하향 조정하도록 시 헌장을 수정하게 됩니다. 또한 시 공공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후보자가 받는 후원금의 일정 금액만큼 보전하는 데 사용되는 공공 자금을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본 제안은 자금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참여 후보자는 선거 연도 초반에 공공 보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 또는 감사원장(Comptroller), 공공지원 담당관(Public Advocate) 후보자의 경우 보전 자금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완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 사항은 2021 년도 예비 선거부터 선거 운동에 이를 적용하기 원하는 후보자에게 적용되며, 이후 2022 년부터는 모든 후보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이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질문 # 2: 시민 참여 위원회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이 뉴욕시 헌장을 개정할 것입니다.

시민 참여 위원회(Civic Engagement Commission)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는 늦어도 2020 년 7 월 1 일에 시작되는 뉴욕시 회계 연도부터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 제안을 함께 있어 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수립한 참여형 예산 계획 프로그램을 이행합니다.

시민 참여 위원회는 기타 뉴욕시 기관을 비롯해 지역사회 기반 단체, 시민 리더들과 협력해 시민 참여 노력을 지원 및 장려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2020 년도 총선거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뉴욕시 투표소에 다양한 언어의 통역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장은 특정 기타 시 기관의 관련 권한과 임무를 이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시민 참여 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하는 8 인과 시의회 대변인이 임명하는 2 인, 자치구 장이 임명하는 각 1 인 등 총 15 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1 인이 위원장이 되고 이 위원장이 위원회 직원을 고용 및 지휘합니다.

이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질문 #3: 시민사회 이사회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이 뉴욕시 헌장을 개정할 것입니다.

새로운 임기 제한 제도로의 최초 전환에 대해 특정 예외를 두되, 시민사회 이사회 이사에 대해 최대 4 기 연속의 2 년 임기로 임기 제한을 부여합니다.

자치구 장은 시민사회 이사회 이사를 임명할 때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 제안은 또 이러한 임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지원 및 보고 요건을 추가합니다.

질문 2, “시민 참여 위원회”가 승인되면, 제안된 시민 참여 위원회는 토지 사용 및 기타 사안과 관련된 자원, 지원 및 교육을 시민사회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